

이사회 회의록

제 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1년 11월 29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 4 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의결일시 : 2021. 11. 29.(월) 14:00~16:00
2. 회의장소 : (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3. 출석상황 :

재 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이 사	감 사	계	이 사	감 사
12	10	2	8	7	1

※ 불참임원 : 4명

* 참석임원

- 이사장 이필영(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이 사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 이 사 권경주(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대표이사)
- 이 사 유유희(유유희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 사 강기정(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사 전벽수(前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이 사 김장옥(행복드림요양원 원장)
- 감 사 이근규(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정책팀장)

4. 의 장 : 이사장 이필영(충청남도행정부지사)
5. 기록자 : 사무처 팀원 이아영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하다.

별첨 : 이사회 의결서 1부

2021년 11월 29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1년 제4차 (임시)이사회 안건심의 결과

①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 건	결 과
1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2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3	임금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4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원안 의결

②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력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 종사자 명칭과 통일
- 2020년 제7차 정기이사회('20.12.24.) 의결사항에 따른 연동규정 개정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일반정규직 정원표

<현 행>

실·센터별 \ 직위별	계	원장	사무처장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계	39	1	1	2	12	23	
사 무 처	11	1	1	-	3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	-	-	1	6	1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	-	1	3	6	

<개 정 안>

직위별 처·센터별	계	원장	사무처장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계	39	1	1	2	12	23	
사 무 처	11	1	1	-	3	6	행정원 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	-	-	1	6	11	상담사 1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	-	1	3	6	지도사 10

[별표 4]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공무직 정원표

<현 행>

직종별 실·센터별	계	사무처장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계	30	2	2	26	청소년동반자 3 야간생활지도사 3
사 무 처	1	-	-	1	1388전화상담사 2 PTSD 전담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	-	-	16	117학교폭력 전담 2 미디어중독 전담 2 진로직업체험시설 전담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	-	-	3	리더 전담 1
천안성문화센터	5	1	1	3	안전 전담 1 성교육전문강사 10
홍성성문화센터	5	1	1	3	교류전담 1 아이키움 대체인력 1

<개 정 안>

직종별 처·센터별	계	사무처장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계	20	-	-	20	청소년동반자 2 고위기관리전담 1 생활지도원 3
사 무 처	1	-	-	1	1388전화상담사 2 PTSD 전담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	-	-	16	117학교폭력 전담 2 미디어중독 전담 2 진로직업체험시설 전담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	-	-	3	리더 전담 1 안전 전담 1 교류 전담 1 아이키움 대체인력 1

<신 설>

[별표 4의2] 수탁기관 일반정규직 및 공무원 정원표

센터별 \ 직종별	계	일반정규직 (센터장)	공무직	비고	
계	10	2	8	성교육전문강사	10
천안성문화센터	5	1	4		
홍성성문화센터	5	1	4		

③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기준·지침」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 권고 이행
- 2020년 센터장 채용관련 특정감사(조사) 지적사항 반영
- 2020년 고용노동부(천안지청) 노무관리지도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반영
-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송부 및 이행 협조 요청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채용방법)</p> <p>① ~ ② (생략)</p> <p>③ (삭제 2017.9.5)</p> <p>④ 원장은 통합채용이 필요한 경우 인력 채용 계획을 사전에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채용방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원장은 통합채용이 필요한 경우 도의 통합 채용 일정에 따라 채용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을 제외한 채용은 채용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와 협의하여 사전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⑤ 원장은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은 10일(선발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20일) 이상의 채용공고를 한 후 응모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채용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p> <p><신 설></p> <p>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⑥ (생 략)</p> <p>⑦ 제4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p>	<p>⑤ ----- ----- ----- ----- ----- ----- 또한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 내부 채용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 5]와 같이 공고기간을 간소화할 수 있다.</p> <p>----- ----- 1. ~ 3.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5항에 ----- ----- ----- -----</p>								
<p><신 설></p>	<p>[별표 5] 비정규직 채용공고 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근무기간</th> <th>공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미만</td> <td>3일 이상</td> </tr> <tr> <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 <td>5일 이상</td> </tr> <tr> <td>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td> <td>7일 이상</td> </tr> </tbody> </table>	근무기간	공고기간	3개월 미만	3일 이상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일 이상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7일 이상
근무기간	공고기간								
3개월 미만	3일 이상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일 이상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7일 이상								
<p>제8조(시험)</p> <p>① ~ ③ (생 략)</p> <p>④ 원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내지 5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면접심사의 경우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 이어야 하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외부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p>	<p>제8조(시험)</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⑤ ~ ⑨ (생략)</p> <p><신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⑩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한다.</p> <p>⑪ 원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필기 합격선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p>
<p>제25조(징계사유)</p> <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25조(징계사유)</p> <p>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u></p> <p>8. <u>회계질서 문란 또는 소극행정을 하였을 때</u></p>
<p>제46조(구성 및 운영)</p> <p>① ~ ③ (생략)</p> <p>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 <u>청소년관련 전문가 중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u></p>	<p>제46조(구성 및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위촉직 위원 : <u>제1항에 따른 외부인사로</u> -----</p>
<p>제65조(퇴직의 구분)</p> <p>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 및 <u>징계퇴직</u>으로 구분한다.</p>	<p>제65조(퇴직의 구분)</p> <p>----- --- 징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p>

현					개					정					안				
[별표 3]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징계사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징계사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품위손상 또는 이권행위										2. 품위손상 또는 이권행위									
가) 법인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	○	○	○		가) 법인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	○	○	○	
나) 이권개입					○	○	○	○		나) 이권개입					○	○	○	○	
다) 압력, 부당청탁, 사건청탁					○	○	○	○		다) 압력, 부당청탁, 사건청탁					○	○	○	○	
라) 직무에 관한 증여.향응(청탁 금지법 위반)					○	○	○	○		라) 직무에 관한 증여.향응(청탁 금지법 위반)					○	○	○	○	
마) <u>폭력행위-직원간, 기타</u>					○	○	○	○		마) <u>직원 간 폭력행위 등</u>					○	○	○	○	
바) <u>(삭제 2017.9.5.)</u>										바) <u>직장 내 괴롭힘</u>					○	○	○	○	
사) 성관련 범죄의 가해자 (신설 2018.12.21.)					○	○				사) 성관련 범죄의 가해자 (신설 2018.12.21.)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5.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가) 문서의 위조.변조.손괴 및 동행사						○	○	○		가) 문서의 위조.변조.손괴 및 동행사					○	○	○		
나) 허위보고						○	○	○		나) 허위보고					○	○	○		
다) <u>(삭제 2017.9.5.)</u>										다) <u>소극행정</u>					○	○	○	○	
라) 시험부정						○	○	○		라) 시험부정					○	○	○		
마) 평정부정						○	○	○		마) 평정부정					○	○	○		
바) 행정질서 문란						○	○	○		바) 행정질서 문란					○	○	○		
사) 문서.장부의 무단열람 및 대출							○	○		사) 문서.장부의 무단열람 및 대출					○	○			
아) <u>(삭제 2017.9.5.)</u>										아) <u>(삭제 2017.9.5.)</u>									
- 이하 생략 -										- 이하 생략 -									
<신설>										부칙 (개정 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4. 임금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2021년 직원 인건비 인상안 반영
-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기준·지침」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 권고 이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성과급의 지급)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성과급의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음주운전,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등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제23조(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u>처장·센터장(부설센터장 제외한다.)</u>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00,000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23조(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u>사무처장, 상담복지센터장, 활동진흥센터장</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복리후생비)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액급식비 : <u>월 13만원</u> 3. ~ 5. (생 략) <신 설>	제24조(복리후생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u>월 14만원</u> 3.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명예퇴직수당 등) ① <u>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p>② 예산의 감소, 임금피크제 등의 이유로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p>
<신설>	<p>부칙 (개정 2021.11.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액급식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5]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1. 제안 사유

-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 강화
- 기관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노사 간 경영책임의 분담으로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 실현. 이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 확보
- 현장·실무 경험과 경영의 효율적 결함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2. 의결 결과: 원안 접수

※ [붙임]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하 “청소년진흥원”이라 한다)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자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임원추천위원회 호선)과 노사대표 각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본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협조) 위원회에서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청소년진흥원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청소년진흥원에서 부담한다.

제5조 (소집 및 공고) 노동자이사 후보자 선출 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고,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7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5일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 등록

제8조 (입후보자 등록) ① 노동자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선거권자의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 위원회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입후보자의 공고) ①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투표용지 등에 인쇄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④ 입후보자가 사퇴[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0조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29.7cm × 세로 42cm 이내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③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재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선출 무효, 청소년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징계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14조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단, 파견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5조 (피선거권) ① 청소년진흥원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최초 노동자이사 선거에 한해서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16조 (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실시하되,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8조 (명부 수정) 선거인 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노동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및 추가하고 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투표와 개표

제19조 (노동자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자이사 후보는 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노동자이사 후보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2인을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근로자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마감한다.

제21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된 선거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 투표를 종료하는 때에는 위원은 투표함에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부재자 투표)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 장소, 방법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제24조 (투표·개표사무) ① 투표·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25조 (개표) ①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표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 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부정선거의 처리) 위원은 선거 기간 중 제12조 각 호의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선출 무효
3. 경고 처분

제8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8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거나 임명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한 때
2. 투표종료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재적 선거인수의 50%에 미달할 때
3. 노동자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사퇴·퇴직·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
4.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선출무효를 결정한 때
5. 제19조 제2항에 의한 선출자가 없을 때

② 위원회는 제1항 제4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선출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출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보궐선거) 노동자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장 보 칙

- 제30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며,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31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2조 (징계회부) 위원회는 위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소속직원이 고의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청소년진흥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진 3×4cm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사원번호	
소속부서		직 급	
근무이력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위와 같이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입후보자 : (인) (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입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5. 재직증명서 1부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자기소개서

※ 작성요령

- 자기소개 및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발전방향, 경영방향에 등에 대한 의견 등
- 글꼴 : 함초롬바탕, 글자크기 : 12포인트, 분량 자유

20 년 ○ 월 ○ 일

작성자 : (서명)

No. _____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성 명 :

사 원 번 호 :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시 분

위와 같이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
절 취 선

.....
절 취 선

No. _____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성 명 :

사 원 번 호 :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시 분

위와 같이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6호】

선 거 결 과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기 호	성 명	득 표 수	비 고
1			
2			
3			
4			
5			

【별지 제7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 보 자 등 록 현황

연번	소 속	사 번	성 명	등록일시
1				
2				
3				
4				
5				
6				

20 년 ○ 월 ○ 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인)

투표 용지 서식

No. _____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기 호	소 속	성 명	기 표
1			
2			
3			
4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인)

위원장

【별지 제9호】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서식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공고 제0000 - 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 대표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함께할 노동자 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모집직위 및 선발인원

모집직위	모집인원	임기	직무내용
노동자이사 (비상근)	0명	0년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중요 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에 관한 제언 등

2. 응모자격

-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재직 중인 노동자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직 노동자로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

3. 보수

- 노동자이사 선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 지급

4.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말, 공휴일은 등록접수하지 않음)

○ 등록방법 : 방문등록(※모든 등록은 마감일 17:00 이전 등록에 한함)

○ 등록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

○ 제출서류

① 노동자이사 입후보 등록 신청서(관련 구비서류 첨부)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노동자이사 선거입후보자 추천서

※ 선거권자의 10%(00명) 이상 추천, 중복 추천 가능

⑤ 재직증명서

5. 선거운동

○ 선거운동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4시까지

○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을 받아야 함

- 선거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벽보의 경우 가로 29.7cm x 세로 42cm 이내

- 동영상 파일, 전자우편 활용한 정견 발표 3회 이내

6. 선거일

○ 선거일 : 20 년 ○월 ○일 00:00 ~ 00:00

○ 선거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 선거인 : 총000명

○ 후보선출 : 유효투표의 다수 얻은 자 순으로 2인 선출

※ 득표수 동일한 경우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7. 추후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투표결과에 따른 대표성 확보 방안, 노동자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 이사회에 추천

○ 이사회 심의·의결 : 이사회 의결(1명)

○ 이사장 임명

○ 최종 임용 결정 및 발표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최종 결정 후 7일 이내에 폐기합니다.
- 모든 절차는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041-554-2000/내선번호 1번)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선거인명부

20 년 ○ 월 ○ 일

연번	소속	사번	성명	투표용지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이사 선거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부 서 :
2. 후보자성명 :
3. 사 원 번 호 :
4. 사 퇴 사 유 :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노동자 이사 후보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 월 ○ 일

후보자 (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